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4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 비로는 0.9% 증가

- 2014년 12월 생산은 건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4.0%), 기타운송장비(-9.9%), 영상음향통신(-13.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4.4%), 기계장비(5.6%), 전기장비(10.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전월 대비로는 2.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8.8%), 보건·사회복지(6.8%), 부동산·임대(6.9%)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여, 예술·스포츠·여가(-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1.4%) 등에서는 감소했지만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전월대비 포함).
- 2014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함.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4.9%),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3%), 화장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전월대비 2.2%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특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함(전월대비 1.7%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9% 감소, 전월대비로는 0.7% 증가
- 2014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생활물가지수 0.3% 감소)

- 201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7(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49.7%), 음식·숙박(1.7%), 교육(1.7%), 의류·신발(2.2%)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9.2%)과 오락·문화(-0.7%)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7.30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전월대비로는 0.2% 증가)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sup>o</su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1/4	2/4	3/4	4/4 <sup>p</sup>	연간 <sup>p</sup>	12월 <sup>p</su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2.1	-1.7	-0.7	0.0	-2.0	0.0	0.4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9	-1.8	-0.8	0.0	-2.2	-0.1	0.2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0.7	-2.3	-1.0	-0.2	-1.3	-0.2	1.7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0.6	-2.8	-1.2	-0.4	-2.6	0.2	-0.2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2.3	-1.7	-0.6	0.1	0.3	-0.6	4.0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1.4	0.8	1.7	0.7	2.7	2.2	3.0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1.2	0.2	1.1	0.7	1.9	1.6	4.5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0.1	-15.4	-10.0	-4.7	5.1	4.6	13.8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2	1.1	1.6	1.4	1.0	1.3	0.8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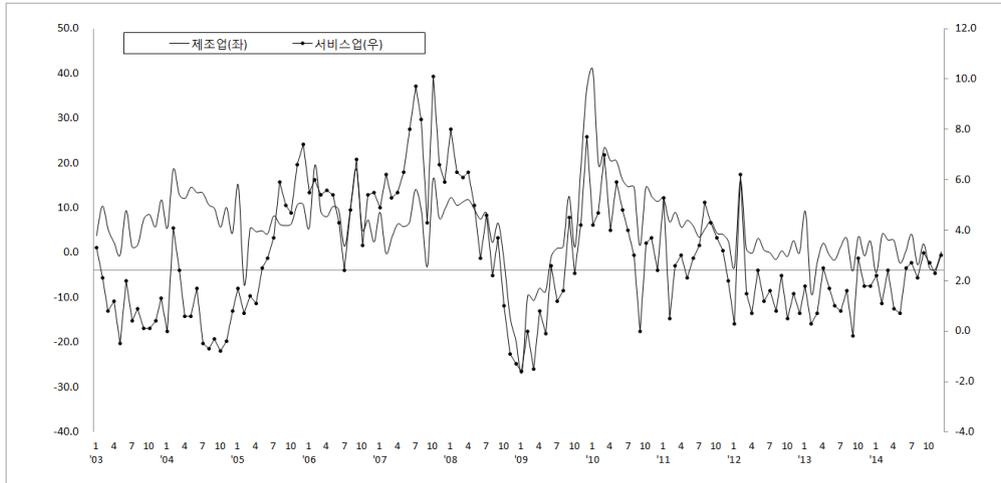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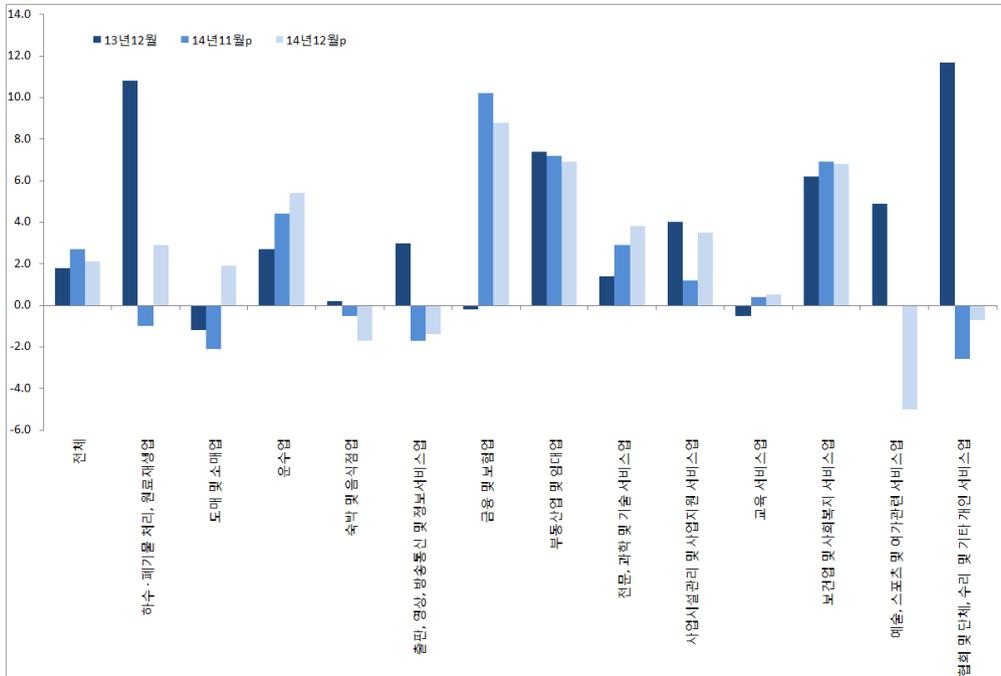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11, 12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2), 『2014년 12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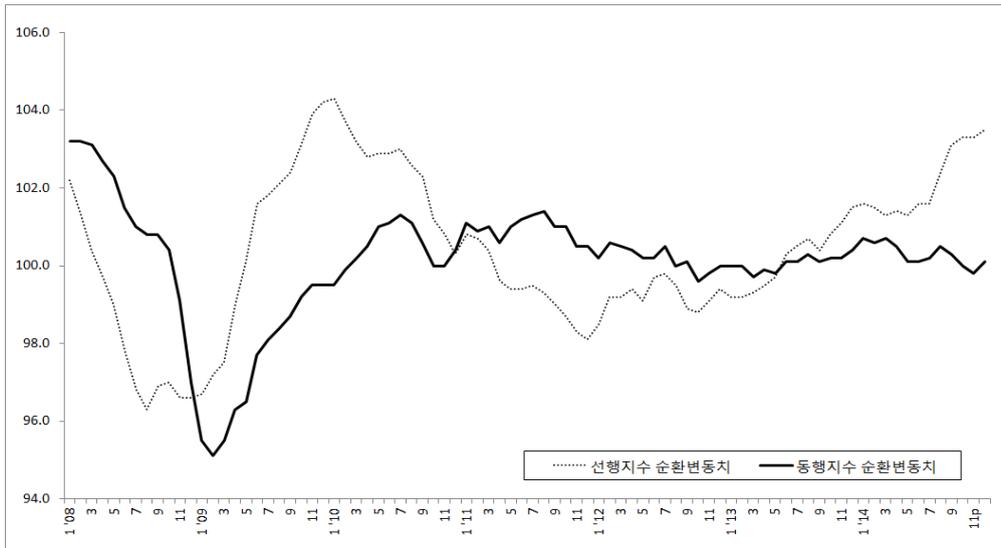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취업자 347천 명 증가**

- 2015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09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4천 명(1.7%)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212천 명으로 163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83천 명으로 282천 명(2.7%) 증가하였음.
- 2015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2.7%)은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여성(49.8%)은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5년 1월 중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1월 중 취업자는 25,1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7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4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4천 명(2.3%)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5년 1월 중 실업자는 98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천 명(10.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5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9.5%) 증가, 여성 실업자는 4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13.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여성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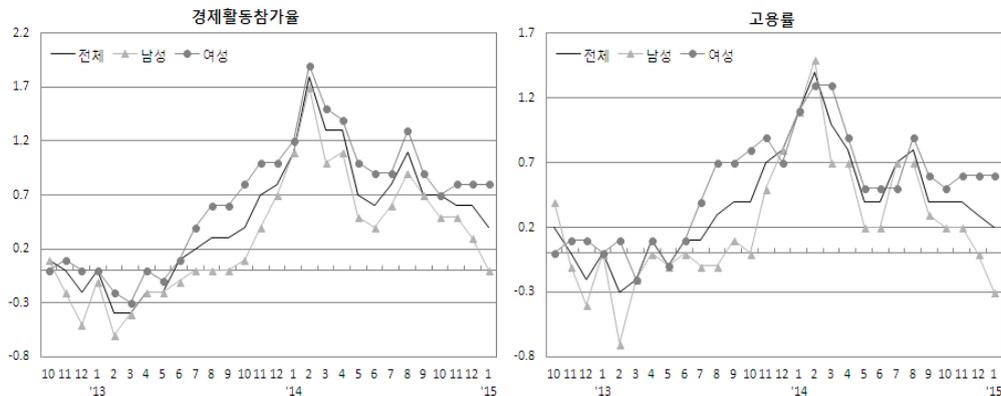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6,078 ( 2.2)	25,945 ( 3.4)	25,650 ( 3.0)	26,767 ( 2.4)	26,810 ( 2.4)	26,622 ( 2.1)	26,270 ( 2.1)	26,094 ( 1.7)		
참가율	61.7	61.3	60.6	63.1	63.0	62.4	61.5	61.0		
취업자	25,346 ( 2.2)	24,913 ( 3.0)	24,759 ( 2.9)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384 ( 1.7)	25,106 ( 1.4)		
고용률	60.0	58.8	58.5	60.8	60.9	60.4	59.4	58.7		
실업자	733	1,031	891	977	884	854	886	988		
실업률	2.8	4.0	3.5	3.7	3.3	3.2	3.4	3.8		
비경제활동인구	16,167 (-0.6)	16,397 (-2.6)	16,654 (-1.9)	15,685 (-1.4)	15,760 (-1.4)	16,066 (-0.6)	16,458 (-0.5)	16,681 ( 0.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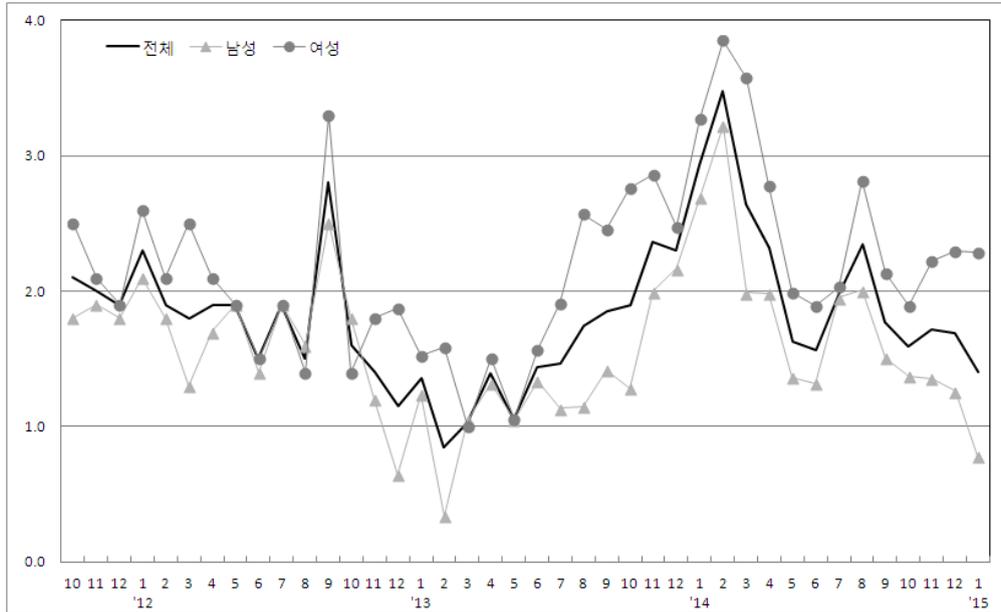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6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0.2%)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7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9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천 명(-0.5%)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8.3%) 증가하였으며,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67천 명으로 129천 명(-3.1%) 감소함.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제조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5천 명, 2.8%), 제조업(142천 명, 3.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4천 명, 1.4%), 건설업(70천명, 4.1%)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3천 명, -9.5%), 전기·운수·통신·금융(-42천 명, -1.4%)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산업	25,346 ( 2.2)	24,913 ( 3.0)	24,759 ( 2.9)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384 ( 1.7)	25,106 ( 1.4)
농림어업	1,504 (-1.0)	1,179 ( 1.0)	1,086 ( 4.5)		1,631 (-3.2)	1,603 (-7.0)	1,395 (-7.2)	1,072 (-8.1)	983 (-9.5)
제조업	4,245 ( 1.2)	4,279 ( 3.0)	4,280 ( 2.2)		4,319 ( 3.3)	4,346 ( 4.7)	4,374 ( 3.0)	4,406 ( 3.3)	4,421 ( 3.3)
건설업	1,783 (-0.5)	1,683 ( 1.6)	1,688 ( 1.1)		1,813 ( 0.6)	1,833 ( 3.2)	1,854 ( 4.0)	1,838 ( 4.7)	1,758 ( 4.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751 ( 2.6)	5,837 ( 5.5)	5,855 ( 4.4)		5,798 ( 3.8)	5,930 ( 4.9)	5,992 ( 4.2)	6,033 ( 4.0)	6,020 ( 2.8)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994 ( 3.6)	8,865 ( 2.4)	8,766 ( 2.7)		9,147 ( 1.9)	9,176 ( 2.1)	9,128 ( 1.5)	9,000 ( 1.2)	8,900 ( 1.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4 ( 1.9)	3,055 ( 1.9)	3,067 ( 2.4)		3,067 (-0.5)	3,026 (-2.5)	3,015 (-1.3)	3,025 (-1.4)	3,025 (-1.4)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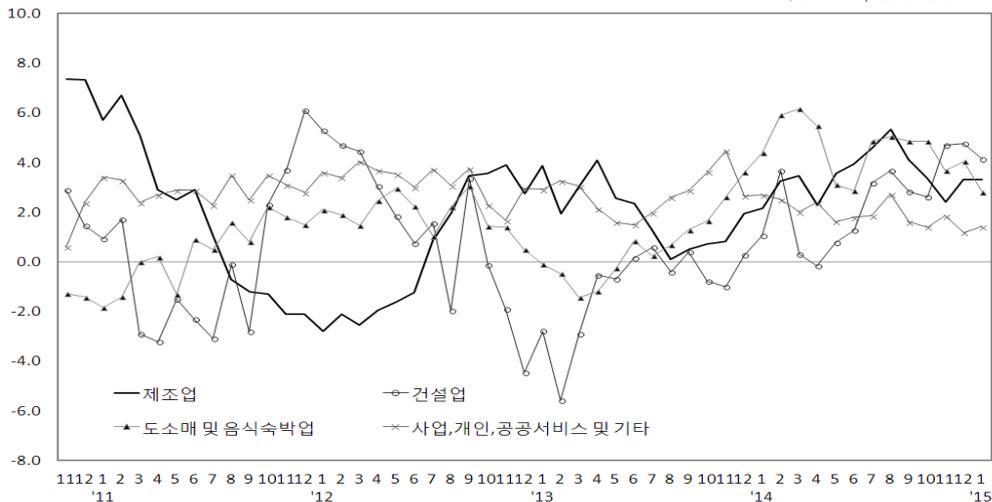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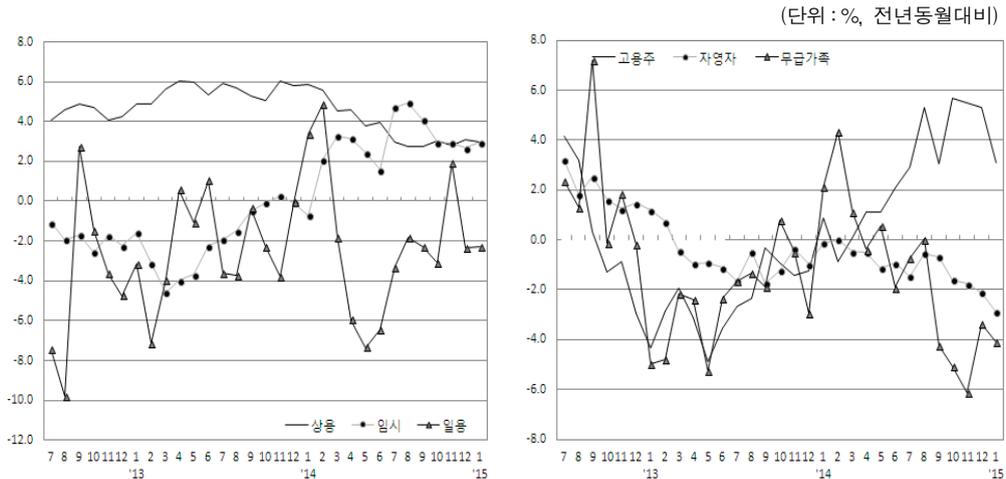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5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8,7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9천 명(2.5%)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3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 명(-1.7%) 감소하였음.
  -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304천 명으로 353천 명(2.9%), 임시근로자는 4,898천 명으로 141천 명(3.0%)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13천 명으로 35천 명(-2.3%) 감소하였음.
  -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7 좌측 참조).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7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7천 명(5.8%),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8천 명(0.7%)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1월			4/4분기	12월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전 체	25,346 ( 2.2)	24,913 ( 3.0)	24,759 ( 2.9)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384 ( 1.7)	25,106 ( 1.4)
비임금근로자	6,854 (-0.9)	6,597 ( 0.3)	6,503 ( 0.5)	6,984 (-0.3)	7,047 ( 0.0)	6,799 (-0.8)	6,506 (-0.6)	6,391 (-1.7)
자영업주	5,618 (-0.9)	5,512 (-0.1)	5,460 ( 0.1)	5,712 (-0.2)	5,760 ( 0.3)	5,625 ( 0.1)	5,468 (-0.1)	5,392 (-1.2)
무급가족종사자	1,236 (-0.8)	1,085 ( 2.5)	1,043 ( 2.1)	1,272 (-0.6)	1,287 (-1.7)	1,175 (-4.9)	1,038 (-3.3)	1,000 (-4.1)
임금근로자	18,492 ( 3.4)	18,316 ( 4.0)	18,256 ( 3.8)	18,806 ( 2.6)	18,880 ( 2.8)	18,968 ( 2.6)	18,878 ( 2.5)	18,715 ( 2.5)
상용근로자	11,925 ( 5.6)	11,985 ( 5.3)	11,952 ( 5.8)	12,175 ( 4.1)	12,181 ( 2.8)	12,280 ( 3.0)	12,310 ( 3.1)	12,304 ( 2.9)
임시근로자	4,935 ( 0.0)	4,835 ( 1.5)	4,757 (-0.7)	5,063 ( 2.4)	5,153 ( 4.6)	5,076 ( 2.9)	5,001 ( 2.7)	4,898 ( 3.0)
일용근로자	1,631 (-2.1)	1,496 ( 2.1)	1,548 ( 3.4)	1,567 (-6.6)	1,546 (-2.5)	1,612 (-1.2)	1,567 (-2.4)	1,513 (-2.3)
36시간 미만	3,395 ( 5.5)	3,593 (-35.4)	3,568 ( 5.9)	3,397 (-29.5)	5,229 ( 2.9)	3,659 ( 7.8)	3,840 ( 9.3)	3,775 ( 5.8)
36시간 이상	21,636 ( 1.7)	20,829 (15.1)	20,517 ( 2.4)	22,090 ( 9.3)	20,184 ( 1.9)	21,779 ( 0.7)	21,202 ( 0.4)	20,655 ( 0.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 60세 미만 전 연령에서 실업률 증가

- 2015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 실업률은 60세 미만 전 연령대에서 상승함.
  - 2015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9.2%, 0.5%p), 30~39세(2.9%, 0.3%p), 40~49세(2.2%, 0.2%p), 50~59세(2.6%, 0.6%p)에서 상승하였고, 60세 이상(4.0%, 0.0%p)은 변동 없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3.7%)에서 0.1%p 하락한 반면, 고졸(4.3%)과 대졸 이상(3.3%)에서는 각각 0.1%p, 0.6%p 상승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12월	1/4분기
			1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 체	733 (2.8)	1,031 (4.0)	891 (3.5)	977 (3.7)	844 (3.3)	854 (3.2)	886 (3.4)	988 (3.8)
15~29세	328 (7.9)	419 (9.8)	372 (8.7)	399 (9.4)	371 (8.6)	350 (8.3)	381 (9.0)	395 (9.2)
30~39세	155 (2.6)	187 (3.2)	150 (2.6)	202 (3.4)	181 (3.0)	164 (2.8)	159 (2.7)	167 (2.9)
40~49세	114 (1.7)	155 (2.3)	133 (2.0)	167 (2.4)	145 (2.1)	146 (2.1)	149 (2.2)	145 (2.2)
50~59세	88 (1.5)	130 (2.2)	113 (2.0)	140 (2.3)	129 (2.1)	136 (2.2)	136 (2.3)	154 (2.6)
60세 이상	48 (1.4)	140 (4.4)	122 (4.0)	69 (1.9)	58 (1.5)	58 (1.6)	62 (1.8)	127 (4.0)
중졸 이하	84 (1.8)	173 (3.9)	164 (3.8)	108 (2.3)	95 (2.0)	96 (2.1)	108 (2.5)	154 (3.7)
고졸	335 (3.3)	443 (4.3)	431 (4.2)	427 (4.1)	414 (3.9)	381 (3.6)	398 (3.8)	457 (4.3)
대졸 이상	313 (2.8)	416 (3.7)	297 (2.7)	442 (3.8)	375 (3.3)	377 (3.3)	380 (3.3)	378 (3.3)
취업무경험 실업자	49	83	76	61	56	54	61	76
취업유경험 실업자	684	948	815	916	827	800	825	913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 2015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98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거의 없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13천 명으로 98천 명 증가하였음.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1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2014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83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4% 상승함.
  - 2014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150천 원)은 초과급여(12.4%)와 특별급여(14.6%)의 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4.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들어 3% 초반에 정체되어 있음.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2,995	3,111	3,070	2,831	3,333	2,983
		( 1.0)	(5.3)	(3.9)	(4.0)	(3.6)	(2.6)	(5.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3,178	3,299	3,252	3,003	3,333	3,150
		(-0.9)	(5.3)	(3.8)	(4.0)	(3.6)	(2.5)	(4.9)
	정액급여	2,341	2,470	2,578	2,566	2,560	2,648	2,646
		( 4.8)	(5.5)	(4.4)	(4.4)	(3.6)	(3.2)	(3.4)
	초과급여	179	181	184	183	182	201	205
	(-8.4)	(1.0)	(1.7)	(1.4)	(0.4)	(9.3)	(12.4)	
	특별급여	498	527	537	502	261	484	300
		(-19.3)	(5.8)	(1.8)	(2.5)	(5.2)	(13.5)	(14.6)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293	1,377	1,375	1,314	1,384	1,368
		(15.1)	(6.4)	(6.5)	(7.1)	(0.9)	(0.6)	(4.1)
소비자물가지수		104	106	108	107.6	107.8	109.1	108.8
		( 4.0)	(2.2)	(1.2)	(1.3)	(1.2)	(1.3)	(1.0)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7	2.3	1.2	4.4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1,368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3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70천 원) 대비 2.6% 상승에 그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333천 원)은 초과급여(9.3%)와 특별급여(13.5%)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3.2%)의 상승폭 둔화로 전년동평균 대비 2.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는 2012년 이후 추세임.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84천 원)은 전년동평균 대비 0.6% 상승에 그침. 이는 전년동평균 대비 6.5%p 감소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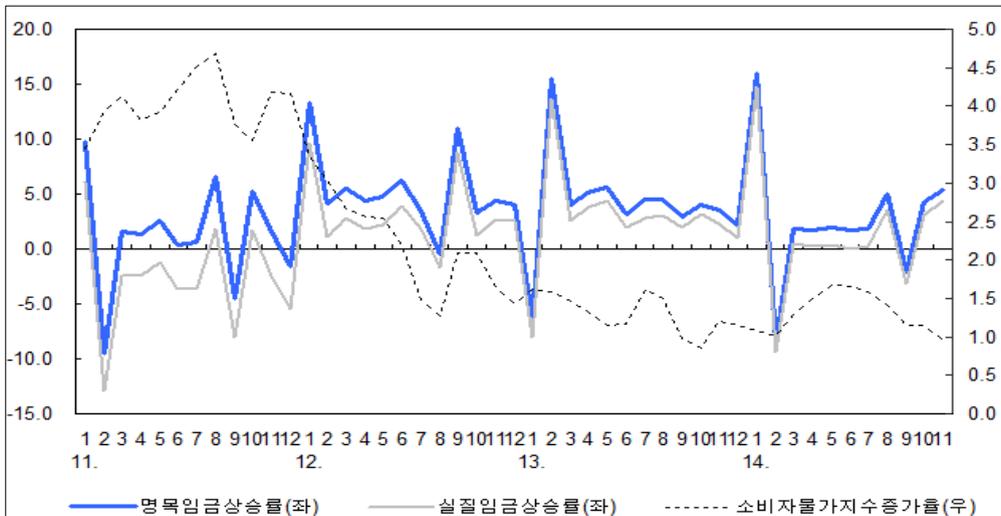
○ 2014년 11월 실질임금은 4.4% 상승함.

-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4.4% 상승함. 2014년 실질임금상승률은 3월부터 5개월 연속 0%대였으나 11월 현재 명목임금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4.4% 상승함(그림 8 참조).

- 2014년 1~11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년 동평균 수준과 같은 반면 명목임금상승률 둔화폭이 커 실질임금 증가율은 1.2% 상승에 불과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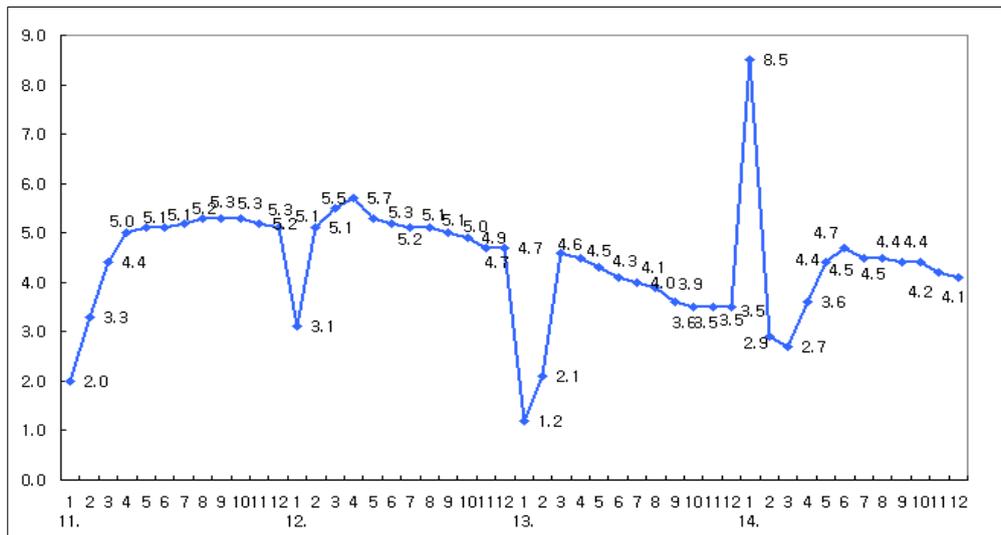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4.1%

- 2014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2013년 12월 인상률(3.5%)에 비해 0.6%p 상승함.
  - － 2014년 1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82.5%로 전년동월(80.6%)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11월 모든 산업에서 임금 상승

- 2014년 11월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 2014년 11월 임금상승이 두드러졌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2%), 금융 및 보험업(9.7%), 건설업(7.5%), 여가관련서비스업(7.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11월 평균 임금은 광업,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 － 2014년 1~11월 평균 임금이 하락한 산업은 광업(-2.6%)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8%)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11월 평균		1~11월 평균	
			11월	11월	11월	11월
전 산업	2,995 ( 5.3)	3,111 ( 3.9)	3,070 ( 4.0)	2,831 ( 3.6)	3,149 ( 2.6)	2,983 ( 5.4)
광업	3,470 ( 4.9)	3,557 ( 2.5)	3,567 ( 2.2)	3,441 ( 0.2)	3,476 (-2.6)	3,521 ( 2.3)
제조업	3,221 ( 6.1)	3,371 ( 4.7)	3,311 ( 4.9)	2,971 ( 6.1)	3,444 ( 4.0)	3,154 ( 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 2.9)	5,231 ( 2.5)	4,382 ( 3.3)	5,384 ( 2.9)	5,178 (18.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 6.7)	2,743 ( 3.3)	2,707 ( 3.9)	2,637 ( 2.9)	2,783 ( 2.8)	2,733 ( 3.6)
건설업	2,273 ( 4.2)	2,414 ( 6.2)	2,403 ( 6.4)	2,314 ( 6.1)	2,484 ( 3.4)	2,487 ( 7.5)
도매 및 소매업	3,122 ( 6.1)	3,168 ( 1.5)	3,115 ( 1.7)	2,889 ( 0.3)	3,159 ( 1.4)	2,984 ( 3.3)
운수업	2,589 ( 8.2)	2,732 ( 5.5)	2,699 ( 5.5)	2,518 ( 0.7)	2,756 ( 2.1)	2,623 ( 4.1)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 5.2)	1,772 ( 1.9)	1,761 ( 1.9)	1,760 ( 6.8)	1,774 ( 0.8)	1,800 ( 2.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 4.3)	3,936 ( 2.2)	3,913 ( 2.4)	3,711 (-2.6)	3,882 (-0.8)	3,826 ( 3.1)
금융 및 보험업	4,988 ( 4.6)	5,058 ( 1.4)	4,997 ( 1.5)	4,549 ( 1.4)	5,150 ( 3.1)	4,988 ( 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 8.8)	2,269 ( 3.4)	2,244 ( 3.6)	2,188 ( 5.6)	2,298 ( 2.4)	2,267 ( 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 6.3)	4,243 ( 3.2)	4,153 ( 3.5)	3,797 ( 3.5)	4,341 ( 4.5)	4,078 ( 7.4)
사업서비스업	1,789 ( 5.3)	1,883 ( 5.2)	1,871 ( 5.5)	1,862 ( 5.8)	1,907 ( 2.0)	1,909 ( 2.6)
교육서비스업	3,123 ( 4.6)	3,261 ( 4.4)	3,276 ( 4.8)	2,951 ( 2.7)	3,388 ( 3.4)	3,147 ( 6.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 4.7)	2,662 ( 2.0)	2,651 ( 2.3)	2,478 (-2.2)	2,670 ( 0.7)	2,636 ( 6.4)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 3.8)	2,326 ( 5.2)	2,287 ( 5.8)	2,123 ( 3.4)	2,361 ( 3.2)	2,281 ( 7.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 2.0)	2,226 (-0.1)	2,203 (-0.1)	2,064 (-2.0)	2,222 ( 0.9)	2,149 ( 4.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1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이외 모든 산업에서 전년 동평균 대비 임금이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제조업(4.0%), 건설업(3.4%), 교육서비스업(3.4%), 금융 및 보험업(3.1%)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4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상승폭이 큼.

– 2014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88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상승에 그침. 이는 초과급여(13.5%)와 특별급여(13.0%)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 상승폭 둔화에 기인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11월 평균	11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252( 3.6)	3,003( 4.0)	3,333( 2.5)	3,150( 4.9)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567( 3.6)	2,560( 4.4)	2,648( 3.2)	2,646( 3.4)
	초과급여	181( 1.0)	184( 1.7)	184( 0.4)	182( 1.4)	201( 9.3)	205(12.4)
	특별급여	527( 5.8)	537( 1.8)	527( 5.2)	261( 2.5)	484(-3.5)	300(14.6)
	비상용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82( 0.9)	1,314( 7.1)	1,384( 0.6)	1,368( 4.1)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 5.9)	2,938( 3.7)	2,919( 3.0)	2,760( 3.8)	2,973( 2.4)	2,881( 4.4)
	정액급여	2,333( 5.9)	2,433( 4.3)	2,424( 3.7)	2,418( 4.3)	2,494( 2.9)	2,495( 3.2)
	초과급여	156( 3.5)	160( 3.0)	160(-0.7)	153( 3.1)	172( 7.5)	174(13.5)
	특별급여	345( 7.7)	345(-0.3)	334(-2.0)	188( 0.4)	307(-4.0)	212(13.0)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 7.0)	1,397( 0.6)	1,324( 7.6)	1,387(-0.2)	1,378( 4.1)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 3.5)	4,583( 3.6)	4,555( 5.1)	3,879( 3.8)	4,736( 5.5)	4,267(10.0)
	정액급여	2,965( 4.3)	3,093( 4.3)	3,075( 3.6)	3,068( 4.4)	3,251( 5.7)	3,274( 6.7)
	초과급여	275(-3.9)	270(-1.6)	266( 2.7)	285(-2.7)	313(16.7)	331(16.2)
	특별급여	1,185( 3.4)	1,220( 3.0)	1,213(16.4)	525( 3.6)	1,173( 2.1)	662(26.0)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22( 4.3)	1,209( 1.9)	1,354(10.9)	1,271( 5.1)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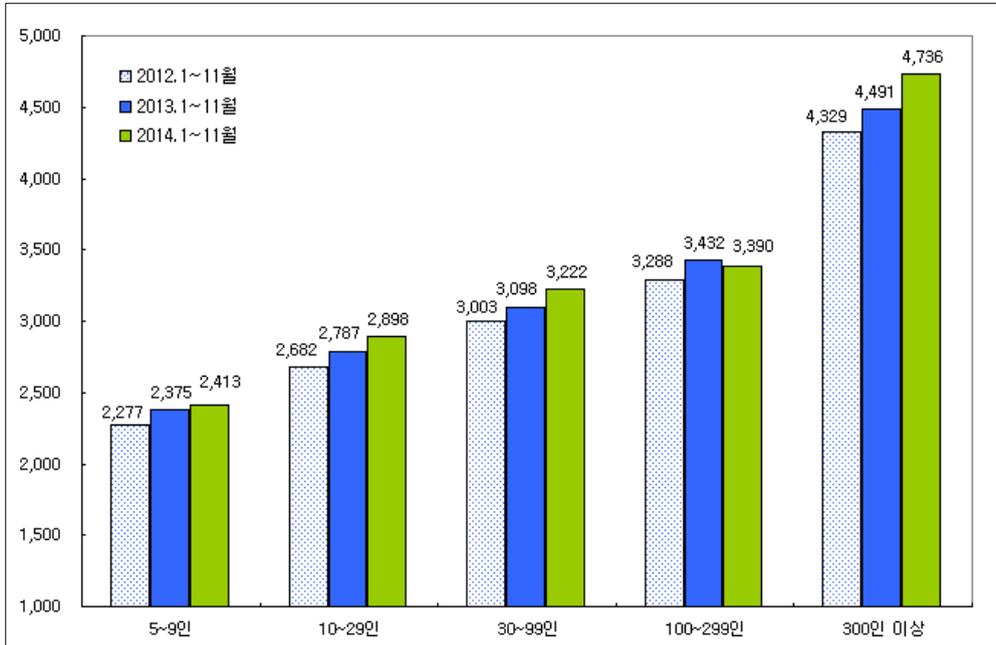
2)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6.7%)는 물론 초과급여(16.2%), 특별급여(26.0%)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함.
- 2014년 11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도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함.
  - 2014년 11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271천 원)은 전년 동월대비 5.1%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1,37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둔화됨.
- 2014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2,973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2.4% 상승에 불과함. 이는 특별급여(-4.0%)의 하락과 정액급여의 상승폭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주: 1~11월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36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상승폭이 확대됨(5.5%). 이는 초과급여의 상승(16.7%)과 더불어 정액급여의 상승폭 확대에 기인함.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년 동평균 대비 0.2% 하락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0.9% 상승함.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21일→20일)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함.
  - 2014년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9.0시간)은 전년동월(175.4시간)에 비해 6.4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도 11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1.1%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평균(172.5시간)에 비해 1.9시간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평균 대비 0.9% 감소한 176.2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4.9% 감소한 116.7시간을 기록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11월 평균		1~11월 평균	
			11월	11월	11월	11월
전체근로시간	174.3(-1.1)	172.6(-1.0)	172.5(-1.5)	175.4(-3.8)	170.6(-1.1)	169.0(-3.6)
상용총근로시간	179.9(-1.2)	178.1(-1.0)	177.8(-1.6)	181.9(-3.6)	176.2(-0.9)	174.8(-3.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0.8)	165.6(-1.0)	165.4(-1.5)	169.5(-3.9)	163.3(-1.3)	162.1(-4.4)
상용초과근로시간	12.8(-5.9)	12.5(-2.3)	12.4(-3.1)	12.4( 0.0)	12.9( 4.0)	12.7( 2.4)
비상용근로시간	122.3(-0.2)	122.5( 0.2)	122.7( 0.6)	118.1(-7.9)	116.7(-4.9)	112.7(-4.6)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광업(-6.2%), 건설업(-5.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5.0%) 등에서 크게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은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교육서비스업(0.8%), 금융 및 보험업(0.1%), 제조업(0.0%) 부문에서만 근로시간이 증가함.
  -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3.3%), 운수업(-2.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6%) 등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11월 평균		1~11월 평균	
			11월	11월	11월	11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2.5(-1.5)	175.4(-3.8)	170.6(-1.1)	169.0(-3.6)
광업	185.3(-0.9)	180.6(-2.5)	180.3(-3.1)	188.9(-0.4)	178.5(-1.0)	177.1(-6.2)
제조업	186.4(-2.2)	185.0(-0.8)	184.6(-1.3)	190.4(-3.0)	184.6( 0.0)	183.1(-3.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3.6(-1.4)	177.7(-4.5)	169.9(-2.1)	173.8(-2.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2.0(-1.8)	182.2(-5.0)	177.3(-2.6)	173.4(-4.8)
건설업	152.5(-0.9)	152.7( 0.1)	152.9( 0.2)	153.1(-5.7)	147.9(-3.3)	145.0(-5.3)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3.1(-1.2)	177.2(-3.8)	171.4(-1.0)	169.3(-4.5)
운수업	181.7( 0.1)	177.8(-2.1)	177.5(-2.7)	180.0(-3.2)	172.4(-2.9)	171.1(-4.9)
숙박 및 음식점업	186.6( 0.2)	177.3(-5.0)	176.8(-5.5)	183.7( 0.2)	174.4(-1.4)	175.7(-4.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2.8(-1.3)	165.5(-4.9)	161.3(-0.9)	157.2(-5.0)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2.4(-1.3)	165.9(-4.0)	162.6( 0.1)	160.0(-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1.5(-1.4)	191.9(-2.9)	189.3(-1.1)	189.7(-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3.8(-1.6)	168.7(-4.1)	162.4(-0.9)	161.8(-4.1)
사업서비스업	173.1( 0.6)	172.3(-0.5)	172.1(-1.1)	176.2(-1.9)	171.1(-0.6)	169.6(-3.7)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50.1(-1.5)	151.5(-4.1)	151.3( 0.8)	147.4(-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 0.7)	172.0(-1.6)	172.1(-1.9)	172.3(-5.1)	168.7(-2.0)	167.6(-2.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0.6)	158.0(-0.1)	157.9(-0.3)	160.9(-1.8)	158.3( 0.3)	157.3(-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7.5(-1.1)	163.4(-5.0)	162.3(-3.1)	159.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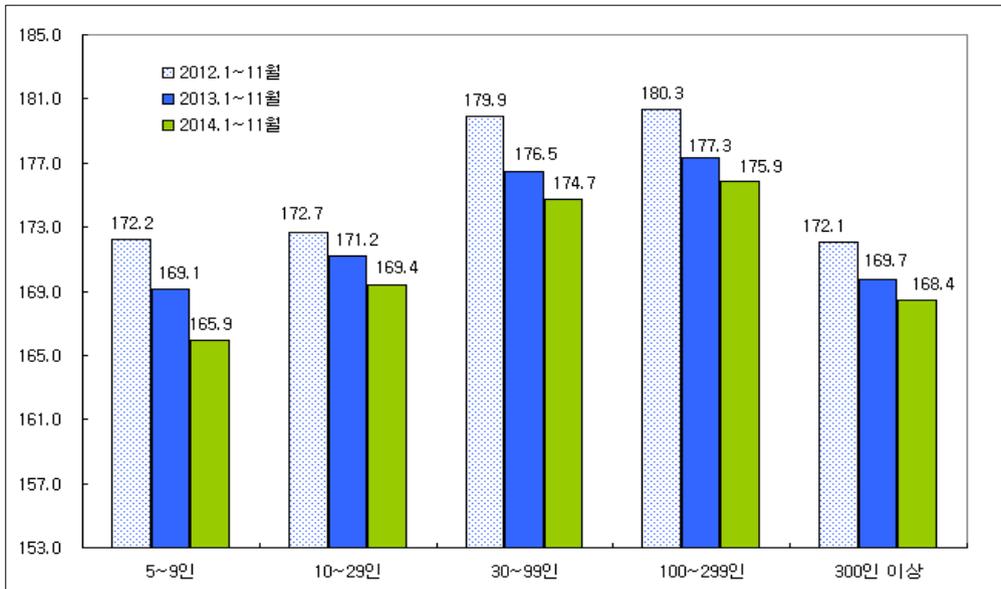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

- 2014년 11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한 169.7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한 166.0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기간평균(1~11월)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4년 1~11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한 171.1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68.4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2014년 1~11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5.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0%,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감소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0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70건)보다 10건 낮은 수치임.
- 지난 1월 조정성립률 61.1%
  - 지난 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7.8%에 비해 3.3% 높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감소와 조정성립률의 상승을 통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들의 감소를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4년, 2015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1	60	45	22	11	11	14	2	12	1	8	15	61.1
2014. 1	70	50	26	9	17	19	0	19	2	3	20	57.8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5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57건)보다 3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58.3%(21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41.7%(15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1	54	36	21	0	7	0	8	0	18
2014. 1	57	25	12	0	3	2	8	0	32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현대중공업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 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한 각종 수당 인상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12일 “노조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함.
  - 또한 결근을 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통상임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감률규정(급여세칙)에 대해 “명칭과 내용대로 감액에 관한 규정일 뿐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노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현대중공업이 2014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12월 당시는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기에 “현대중공업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라 발생한 연장·휴일 근로수당 인상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결 이후, 한국경총은 “종전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하면서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며 여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함.
  - 반면에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울산지법 판결을 환영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이 복잡하게 왜곡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개혁 기초제시안에 쟁의행위 결의**

-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밝힌 정부 기초제시안의 내용을 공개함.
  -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재직자는 2016년부터 1.5%로, 신규공무원은 1.0%로 낮아지며, 기여금 납부 기간은 현재 33년이지만 기초제시안에는 33년이 지나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 퇴직 후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액의 최소 50%

를 지급해 왔으나 기초제시안에는 선거직·공공기관·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전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김.

- 인사혁신처는 전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설명한 내용은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자체적으로 준비한 회의용 초안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함.

○ 전국공무원노조는 정기전국대의원회를 열고 최근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힘.

-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 안에 비해 퇴직금이 줄고, 퇴직 공무원이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노조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별개로 활동기구를 구성함.
- 대의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4월 25일 10만 명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한 노조관계자는 “정부는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기초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일어날 파장에 대비해 미리 파업을 결의한 것”이라며 “범국민운동본부에 여러 외부단체가 참여할 예정인데, 공동투쟁본부와 어떻게 차별화된 활동을 이어 갈지는 지금부터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의

○ 지난달 12일 민주노총은 재적대의원 1천1명 중 6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4월 총파업과 이를 위한 투쟁기금 80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킴.

-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같은 재벌 살리기 정책이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부르고 있고, 민주노총은 마땅히 투쟁의 길목을 열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선제적인 4월 총파업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진격하자”고 호소함.

- 총파업 방침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은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가결됐으며,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총파업 4대 목표로 정함.
- 통상 산하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이 집중되는 6-7월이 아닌 4월을 파업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4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쟁전선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4월 단기 총파업만으로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기 어려운 만큼 상반기 내내 투쟁의 파고를 유지·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민주노총은 정치파업과 조기 임단협 투쟁을 결합한 형태로 총파업을 전개하며 집회 중심 하루파업이 아니라 파업 일정과 규모를 점차 늘려 가는 파상파업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노조법에 규정된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서 벗어난 정치파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불법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파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특별기금을 조성해 조합비 납부자 기준으로 66만 명의 조합원들에게 1만 원 이상 기금을 걷어 8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총파업에 따르는 희생자 구제기금을 확보하고, 조합원 대상 선전사업과 국민 대상 홍보사업 비용으로 쓸 방침임.

#### ◆ 금호타이어, 근로자 ‘도급 반대’ 분신

- 노동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추진해 온 업무 도급화에 반대해 온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곡성공장 대의원이 공장 본관 앞에서 불에 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 고인의 차량에서는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고, 고인이 직접 작성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도급화 결사저지를 위한 조합원 서명 결의서’도 발견되었음.
  -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당시 노사합의에 따라 597개 직무 가운데 87%에 달하는 521개 직무를 도급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워크아웃이 종료된 뒤에도 업무 도급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급 전환 대상 업무 노동자들은 지난달부터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천막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회사의

도급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음.

- 지회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워크아웃이 종료됐으니 추가 도급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회는 지난달 3일 광주 지법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 지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윤에 눈 먼 금호타이어의 탐욕이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회사는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추가 업무도급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 ◆ 한국지엠 노사, 비정규직 해고 위기

-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물량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인 근무형태를 1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노동계에 따르면 군산공장 노사는 지난달 10일 “군산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고 시간당 생산대수(JPH)를 48대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힘.
  - 노사는 교대제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대상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아웃소싱했던 일감을 공장 안으로 되돌리는 인소싱을 추진하여 총 210개의 일자리를 보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노사는 1교대 전환 뒤 품질 향상과 생산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월 5시간 상당의 OT수당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포함되지 않음.
  - 일감 축소로 공장 내부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공장 밖 아웃소싱 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동시에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660여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으로 우려됨.

### ◆ 삼성테크윈, 한화 매각에 노조 간 갈등

- 한화그룹에 대한 회사 매각을 둘러싼 창원 삼성테크윈의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수노조의 한쪽이 매각을 용인하는 교섭안을 작성해 협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노조가 반발하면서 노사간에서 노노간으로 갈등이 확산됨.
  -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는 최근 삼성테크윈 기업노조가 ‘지회 단체 협약안 우선 교섭 요구안에 반영 안내 및 우선 교섭 요구안 설명 자료 배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 삼성테크윈 지회에 따르면 기업노조의 교섭안에는 ‘회사는 매각과 관련해 발생하는 강제적 지위 박탈 등 변화에 대해 조합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매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김.
  - 또한 ‘회사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고 회사 사정으로 해고자가 발생하면 통상임금 3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음.
- 금속노조 지회는 “기업노조의 교섭안은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금속노조 지회 관계자는 “이 교섭안은 노조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매각을 허용하고, 매각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로금 지급을 명분으로 추가 해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노조의 교섭안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힘.
  - 이어서 관계자는 “기업노조 측은 출범 당시 매각 철회 혹은 매각 무효만이 유일한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는데 두 달도 안 돼 태도를 바꾼 저의를 알 수 없다”고 말함.
  - 기업노조가 우선교섭 노조 지위를 갖고 있지만 조합원이 1,600명으로 전체 조합원 4,7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교섭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게 금속노조 지회의 판단이며, 금속노조 지회는 매각 철회 요구집회 개최 등 회사와 기업노조의 매각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방침임.

◆ **고용노동부, 목시적 근로계약 판정**

-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동일지부·두성지부가 제기한 위장도급·불법파견 사건에서 “동양시멘트는 직접고용을 체결하라”고 통보하면서 위장도급 진정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목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함.
- 동양시멘트 협력업체인 동일(주)과 (유)두성기업은 동양시멘트 제품 제조를 위해 석회암 채굴·운반과 상품 포장·출하를 담당하는 형식상 도급업체로,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가 협력업체 운영 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직접고용한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6월(동일)과 7월(두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
  -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근

거로 △두 업체는 외형상 동양시멘트의 독립 업체이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원청이 주요하게 개입한 사실, △오랜 기간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산시설과 장비를 원청과 공유한 사실에도 주목함.

- 이후 동일(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110명에게 해고를 통보함.
  -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동일지부는 “동일은 지부와의 교섭석상에서 ‘노동부에 낸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취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동양시멘트와 동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함.
  - 지부는 “하청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동양시멘트가 우리를 고용한 진짜사장이라는 사실이 노동부 위장도급 판정으로 확인됐다”며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기로 함.
- 동양시멘트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사내하청업체 도급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추가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이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정한 것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노무관리부서 역할만 했다는 뜻이며, 처음부터 파견근로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적용해 ‘직접고용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수 없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상습적 임금체불 처벌 강화**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노동자는 29만 3,000명으로 2013년보다 9.8% 증가했고, 체불금액은 1조 3,195억 원으로 2013년보다 10.6% 늘었음.
  - 고용노동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의 영향이 음식숙박업 같은 영세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고 분석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만큼의 부가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음.

-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보상받을 길이 열렸으나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연간 4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했거나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4개월분 이상이어야 함.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임금을 상습 체불하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 때 체불 자료가 공개돼 불리해짐.
- 또한 퇴직·사망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을, 재직근로자는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을 적용함.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